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88
----------	-----

발의연월일 : 2016. 7. 19.

발 의 자 : 이주영 · 권성동 · 이종배
조훈현 · 정우택 · 윤한홍
김규환 · 이종구 · 이양수
김영춘 · 윤후덕 · 이찬열
이석현 · 백혜련 · 심상정
주승용 · 권석창 · 김도읍
김성원 · 김영우 · 양승조
오신환 · 이명수 · 김관영
진선미 · 성일종 · 유은혜
한정애 · 오제세 · 백재현
윤관석 의원(31인)

제안이유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 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지 아니하므로,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의 명시, 온라인 자료의 납본, 용어의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체적 직무의 명시(안 제2조)

- 1) 도서관서비스,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 국회전자도서관의 운영,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등 현행 국회도서관의 조직과 사무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를 명시함.
- 2) 입법지원기관으로서 국회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증가하고, 국회도서관의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분관의 설치(안 제6조)

- 1)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분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2) 국회내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직무의 효율적 수행이 기대됨.

다. 온라인자료의 납본(안 제7조)

- 1)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공공기관에 한해서 온라인자료도 납본하도록 의무화하되, 온라인자료 납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회도서관이 직접 온라인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도 가능하도록 함.
- 2) 석·박사학위논문에 대해서는 그 학위논문과 디지털 파일을 납본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석·박사학위논문이 납본 대상임을 강조함.

- 3)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4) 온라인자료와 석·박사학위논문에 대하여 국가지식의 전승과 입법지원에 필요한 자료의 납본과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휴먼네트워크의 구축(안 제8조)

- 1) 입법활동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고 휴먼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 입법활동에 필요한 분야에 관해서 도서관자료 외에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기타 규정의 정비

- 1) 시대에 맞지 않은 용어를 도서관자료, 도서관서비스 등의 현대적 용어로 변경하고, 한자로 된 용어를 우리말로 변경하거나 순화함.
- 2) 「국회도서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의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도서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2.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회답·제공
3. 국회전자도서관의 구축·운영
4.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
5. 입법활동에 관한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6. 국내외 입법지원기관, 다른 도서관 등과의 교류·협력
7.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

② 도서관은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과 공중에 대하여 도서

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무원의 임용) ① 도서관에 국회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관장) ① 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② 관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 관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도서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도서관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고금관리·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사무·공직자재산등록사무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조직) ① 도서관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관장·실장·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관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4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중 그 소관 사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④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와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와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은 관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분관의 설치) 도서관은 제2조에 따른 직무의 효율적 수행과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분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공공기관등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의 온라인자료를 수집하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활동 지원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 10부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를 제외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그 학위논문이 간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위논문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납본의 절차·보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① 관장은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관리·활용을 위하여 인적자원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적자원 정보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과 폐기) ① 관장은 소장자료 중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다른 도서관, 공공기관등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소장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환·이관·폐기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① 도서관의 발전과 제2조에 따른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요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장 소속으로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금품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시설·도서관자료·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품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도서관자료”, “도서관서비스”, “온라인자료”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제2조를 준용한다.

②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인적자원”에 대하여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2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규칙·규정·내규·지침·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소관분장기구 및 정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당시 종전의 국회사무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헌정자료관실을 포함한다)의 사무분장기구 및 정원 등은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에 의한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국회도서관의 사무분장기구 및 정원등으로 본다. 다만,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당시 종전의 국회사무처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장은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도서관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제4조(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당시 종전의 국회사무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소관업무(헌정자료업무를 포함한다)를 담당하고 있던 자는 1988년 12월 29일에 국회도서관소속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을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국회도서관 또는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도서관법」 제20조의2

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을 “「국회도서관법」 제7조에 따라 국회도서관 또는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한다.